

예산총칙

2017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75,302,524	14,259,076
일반회계	348,232,101	10,446,963
특별회계	127,070,423	3,812,113
공기업특별회계	7,760,667	232,820
의령친환경골프장지방직영기업공기업특별회계	7,760,667	232,820
기타특별회계	119,309,756	3,579,29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5,808,539	474,25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15,228	18,457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42,617,316	1,278,519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8,059,608	241,788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2,742,230	382,267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1,675,000	50,250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16,858,455	505,754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985,750	29,573
의령군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19,947,630	598,429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생략"

제 4 조 "생략"

제 5 조 "생략"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8,010,436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8,5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